

# 증권담보용자(담보대출)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검토필 24-0114호 [심의일: 2024. 03. 27]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증권담보용자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증권담보용자</b>는 고객님의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li><li>• 증권담보용자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시 <b>대출 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b>가 필요합니다. * <b>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b> : 담보증권 가치가 담보유지비용 하회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li><li>• <b>은행 등 신용대출과의 차이</b>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서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증권사의 증권담보대출 거래는 담보유지비용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증권담보대출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b>대출거래를 이용한 투자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b>가 있습니다.</li></ul>																															
<b>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증권담보용자(해외주식담보대출 포함)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자료가 제공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타금융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고객의 신용 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b></li><li>• <b>연체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b> 만기 미상환시 <b>담보증권이 임의처분</b>되며, <b>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b>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li>• <b>담보유지비용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 &lt;예시1&gt; A주식(2그룹, 담보유지비용 140%) 1천만원(담보수량 1천주) 담보로 650만원 대출 후 추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용을 하회한 경우 <b>반대매매 절차</b><table border="1" data-bbox="335 1272 1066 1411"><tr><td>D일</td><td>담보유지비용 하회 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 납부 요구</td></tr><tr><td>D+1일</td><td>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td></tr><tr><td>D+2일</td><td>반대매매 실행</td></tr></table><table border="1" data-bbox="335 1429 1476 1818"><thead><tr><th>날짜</th><th>주식가격</th><th>계좌평가금액</th><th>담보평가비율*</th><th>비고</th></tr></thead><tbody><tr><td>담보대출 실행</td><td>10,000원</td><td>10,000,000원</td><td>153%</td><td>-</td></tr><tr><td>D일</td><td>9,000원</td><td>9,000,000원</td><td>138%</td><td>담보유지비용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 요구</td></tr><tr><td>D+1일</td><td>8,100원</td><td>8,100,000원</td><td>124%</td><td>추가담보 미납 (100만원 담보부족)</td></tr><tr><td>D+2일</td><td colspan="4">·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 수량 = <math>\frac{(6,500,000원 \times 1.4) - 8,100,000원}{(6,885원 \times 1.4) - 8,100원} = 650</math>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임의상환 (반대매매)'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tbody></table><p>*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 ÷ 대출금</p><p>☞ 반대매매 수량(650주)이 7,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용(140%)을 충족하기 위한 <b>임의처분 금액은 약 455만원(650주 × 7,000원)으로 추가담보 미납금액 (100만원)의 약 4.6배 수준</b></p></li></ul>	D일	담보유지비용 하회 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D+2일	반대매매 실행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담보대출 실행	10,000원	10,000,000원	153%	-	D일	9,000원	9,000,000원	138%	담보유지비용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8,100원	8,100,000원	124%	추가담보 미납 (100만원 담보부족)	D+2일	·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 수량 = $\frac{(6,500,000원 \times 1.4) - 8,100,000원}{(6,885원 \times 1.4) - 8,100원} = 650$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임의상환 (반대매매)'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일	담보유지비용 하회 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D+2일	반대매매 실행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담보대출 실행	10,000원	10,000,000원	153%	-																												
D일	9,000원	9,000,000원	138%	담보유지비용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8,100원	8,100,000원	124%	추가담보 미납 (100만원 담보부족)																												
D+2일	·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 수량 = $\frac{(6,500,000원 \times 1.4) - 8,100,000원}{(6,885원 \times 1.4) - 8,100원} = 650$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임의상환 (반대매매)'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2>

A주식(4그룹, 담보유지비율 150%) 1천만원(담보수량 1천주) 담보로 500만원 대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한 경우

반대매매 절차

D일	담보유지비율 하회 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D+2일	반대매매 실행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담보대출	10,000원	10,000,000원	200%	-
D일	7,400원	7,400,000원	148%	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 요구
D+1일	6,900원	6,900,000원	137%	추가담보 미납 (60만원 담보부족)
D+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매매 실행</li> <li>· 반대매매 수량 = <math>\frac{(5,000,000원 \times 1.5) - 6,900,000원}{(4,830원 \times 1.5) - 6,900원}</math> &gt; 보유주식 1,000주</li> <li>☞ 산정된 반대매매 수량이 보유주식 1,000주보다 크기 때문에 보유주식 모두 반대매매 필요</li> </ul>			

☞ 반대매매 수량(1,000주)이 6,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5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600만원(1,000주×6,000원)으로 **추가담보 미납금액 (60만원)의 약 10배 수준**

민원 제기,  
상담 요청을  
위한 연락처

· 본 상품에 대한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영업점, 금융지원센터 (☎1588-4488) 및 홈페이지  
(www.daishin.com)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권담보용자(담보대출) 상품설명서

## 1. 상품개요 및 특성

### ·증권담보용자 구분

- 가. 주식담보대출 : 고객 계좌에 보유(결제기준)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 나. 매도담보대출 : 고객의 계좌에 보유(결제기준)한 증권의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을 때 결제예정 금액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단, 신용/대출 잔고 매도 시 제외)
- 다. 채권/ELS담보대출 : 고객의 계좌에 보유(결제기준)한 채권, ELS/DLS/ELB/DLB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 라. 수익증권담보대출 : 고객의 계좌에 보유(결제기준)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 ·대출 약정

- 가.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출약정은 내점 또는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단,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동의한 고객)을 통해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나. 다음의 고객님들은 대출약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 ① 신용공여 투자자확인서 미장구 고객
  - ②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 515점 이하인 고객
  - ③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 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 ④ 외국인
  - ⑤ '개인신용정보' 미동의 고객
  - ⑥ 담보비율미달계좌, 사고등록계좌, 실명미확인계좌, 통폐합계좌, 랩계좌, 증거금 면제계좌
  - ⑦ 한국증권금융 전질제공 미동의계좌
- 다. 대출 약정은 계좌 내 상품별로 체결이 가능합니다(해지 시까지 유효).  
단,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위한 대출약정의 경우에는 입금 및 현금상환을 위한 '입출금연결상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출금연결상품은 신용/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종합투자상품, 위탁자산상품, 펀드상품에 한합니다.)
- 라. 대출약정 시 인지세법상에 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약정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마. 대출 약정 시 본인의 대출최고한도를 정하며, 대출최고한도 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을 징수합니다.
- 바. 고객은 대출에 대한 한도의 증액 등 중요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 대출약정 해지는 신청서에 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해지의사에 대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 해지 시 **인지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출 한도

- 가. 고객별 대출 총한도(주식담보대출, 채권/ELS담보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합산)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10억원 입니다.
- 나. 매도담보대출은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 고객 대출한도가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신규 신용공여(신용/대출) 약정 및 신청/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전체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 ② 관리점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 ③ 종목별 신용공여 한도 초과

### ·대출가능종목 및 금액

- 가. 주식담보대출
  - ① 대출가능종목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대출가능 종목으로 분류한 종목
  - ② 대출가능금액 : 대출가능종목의 평가금액<sup>주1)</sup>을 아래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대출비율	65%	60%	50%	50%	40%	불가

주1) 평가금액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당일종가 수신 이후에는 당일종가)입니다.  
(단, 권리락 등의 사유로 기준가격(전일종가)이 없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의 경우 대출가능종목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상장폐지예고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 투자주의종목(투자주의 지정일로부터 5영업일 까지)
  - 신규상장(등록) 후 1개월 미경과 종목 및 당사가 기업공개한 경우 3개월 미경과한 종목

- ④ 대출가능/불가종목의 그룹조정은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기(연 2회) 및 수시로 조정됩니다. 그룹조정이 있을 시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⑤ 이외에도 회사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 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규 대출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증거금을 차등적용 현황조회(화면번호 724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매도담보대출

- ① 대출가능종목 : 결제된 주식의 매도 체결된 종목(단, 신용/대출 잔고 매도 시 제외)
- ② 대출가능금액 : 매도체결금액의 98%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단, 미결제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결제된 주식의 매도대금이 전일/당일 매수주문금액으로 사용된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 채권담보대출(ELS담보대출)

- ① 대출가능종목 : 국채, 지방채 등 당사가 선정한 채권, 당사가 발행한 ELS(DLS), ELB(DLB) 중 당사가 선정한 ELS(DLS), ELB(DLB)
- ② 대출가능금액 : 평가금액<sup>주1)</sup>을 다음의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 비상장채권, 주식관련사채(교환사채, 전환사채 등)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구분	채권담보대출		ELS담보대출	
	국채	지방채	ELB(DLB)	ELS(DLS)
대출비율	80%	70%	70%	50%

주1) 평가금액은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라. 수익증권담보대출

- ① 대출가능종목 :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중 당사가 선정한 집합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 내 집합투자증권 중 당사가 선정한 집합투자증권
- ② 대출가능금액 : 당일 고시된 기준가격의 평가금액을 다음의 대출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수익증권담보대출		연금저축담보대출
	채권형	주식형/혼합형	
대출비율	80%	50%	50%

- ③ 다음의 경우 대출가능종목에서 제외됩니다.
  -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상장된 집합투자증권 제외)
  - 세제혜택 있는 상품 내 보유한(결제기준) 집합투자증권

·대출 신청

가. 대출은 영업일 16:00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나. 다음의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① 미상환 용자금/대출금 발생 계좌
- ②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만 계좌
- ③ 담보유지비율 변경 미승인 계좌(영업점 확인 후 가능)
- ④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 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 ⑤ 사고계좌, 증거금면제계좌
- ⑥ 한국증권금융 전질제공 미동의계좌
- ⑦ 1회 대출신청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 ⑧ 대출신청수량이 이미 질권설정, 선물대용증권지정, 보호예수지정, 매수주문 등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된 경우

·대출기간 및 연장

대출 구분	대출 기간	만기연장
주식담보대출	180일	조건 충족시 가능
매도담보대출	매도 체결된 종목의 결제일까지	
채권(ELS)담보대출	대출일로부터 1년과 채권(ELS) 만기일 중 짧은 기간	만기연장 불가
수익증권(펀드)담보대출	180일	만기연장 1회 가능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6그룹 종목으로 편입시 만기연장이 불가 합니다.

※ 만기연장 관련 상세 내용은 “6. 대출 기간 및 연장사항” 참조

**·대출 이자 및 연체이자**

가. 대출이자 적용은 '기본금리 + 기간별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구분	주식담보대출	채권/ELS담보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기본금리	연 7.4%			연 8%
기간별 이자율	~ 180일 : 기본금리 181일 ~ 360일 : 기본금리 + 0.3% 361일 ~ : 기본금리 +0.6%			-
연체이자	기본금리 + 3.0% (최대 연 9.5%)			-

※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전월 CD수익률 평균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체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참고)CD수익률 설명서” 부분 참조)
- 가산금리 :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당사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대출업무안내] 참조

나. 이자는 체차법(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이자계산은 한편날기(대출일 불산입) 방식을 적용하며, 보통년은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적용합니다. (원미만 절사)

**[예시] 주식담보대출 이자징수**  
**대출일 : 3월 1일, 대출금 10,000,000원(기본금리 연 7.4%)**

- ▷ 8월 1일 정기이자 (사용일 152일, 7월 사용 일수 31일)
  - ☞ (10,000,000원×7.4%×31일÷365일) = 62,849원 징수
- ▷ 9월 1일 정기이자 (사용일 183일, 8월 사용 일수 31일)
  - ☞ (10,000,000원×7.4%×28일÷365일)+(10,000,000원×7.7%×3일÷365일) = 63,095원 징수
- ▷ 다음 해 3월 1일 정기이자(사용일 364일, 2월 일수는 28일로 가정)
  - ☞ (10,000,000원×7.7%×24일÷365일)+(10,000,000원×8.0%×4일÷365일) = 59,397원 징수
- ▷ 다음 해 3월 5일 상환(사용일 369일)
  - ☞ (10,000,000원×8.0%×5일÷365일) = 10,958원 징수

라. 이자는 매월 첫 영업일에 정기이자를 징수하고, 상환일(매도상환 시 매도결제시)에 상환이자가 징수됩니다.

마. 매도담보대출의 이자는 매도결제시에 자동 징수됩니다.

바. 고객의 기여도, 수익 및 자산 등을 감안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우대금리 적용시에도 기간별 이자율은 가산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에 연체이자율은 우대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담보유지비율**

가.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되며, 주식담보대출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식담보대출		채권/ELS담보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1그룹, 2그룹, 3그룹	140%	
담보유지비율	4그룹, 5그룹	150%	140%
	6그룹	160%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은 “증거금률 차등적용 현황 조회(화면번호 724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종목그룹 변경시 적용일 담보평가시점부터 변경 된 종목그룹의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됩니다.

나. 담보유지비율은 상품 내 신용/대출의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다. 대주주의 경우 신용·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주주담보유지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2, 3그룹 : 150%, 4, 5그룹 : 170%, 6그룹 : 200%)

라. 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계좌의 적용비율(담보유지비율) 계산식〉

$$\frac{[(2\sim 3\text{그룹종목의 신용대출금} \times 140\%) + (4\sim 5\text{그룹종목의 신용대출금} \times 150\%) + (6\text{그룹종목의 신용대출금} \times 160\%)]}{(\text{대출금} + \text{신용거래용자금})} \times 100 (\%)$$

〈예시〉 2그룹 대출금 100만원, 4그룹 대출금 50만원 보유 계좌의 담보유지비율  
 $\Rightarrow \{(100\text{만원} \times 140\%) + (50\text{만원} \times 150\%)\} \div (100\text{만원} + 50\text{만원}) = 143\%$

마.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 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 담보평가 및 추가담보제공기간

D일	담보부족 1회 발생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횟수를 증가시킵니다
D+1일	담보부족 1회 해소	기존 담보부족 1회 계좌가 16시까지 담보부족금액 전액 입금/입고하면 담보부족 횟수를 클리어합니다. 단, 해당일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 시 다시 담보부족횟수 1회로 증가 시킵니다. (담보부족 미발생시에는 담보부족횟수 0회)
	담보부족 2회 발생	기존 담보부족 1회 계좌가 담보 미충족시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횟수를 증가시킵니다.
D+2일	임의상환(반대매매)	기존 담보부족 2회 계좌가 담보 미충족시 임의상환(반대매매)합니다.

· 기타사항

- 가. 매분기말 누적기준 미수금 발생 20일 초과 또는 담보부족발생 20회 초과 발생시 신용거래가 1개월간 제한됩니다.
- 나. 증거금 100% 계좌일지라도 매도상환으로 인한 이자징수 또는 차손발생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담보대출 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임의처분(반대매매)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영업점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시 적용 수수료율

거래금액	수수료율
5천만원 이하	0.4972959%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4472959% + 25,000원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0.3972959% + 75,000원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3472959% + 175,000원
5억원 초과	0.2972959% + 425,000원

· 인지세는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 약정금액에 따른 인지세

대출 약정금액	총 인지세	회사	고객
5천만원 이하	없음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3만5천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5천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5천원	17만5천원

### 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대출금의 상환은 전부상환 및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만기일 전에도 상환 가능합니다.

-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 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HTS, MTS) 에서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 현금상환과 매도상환 가능

가. 상환 방법은 현금상환과 매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나. 현금상환은 영업일 17:00까지 가능하며, 상환과 동시에 담보수량이 질권해지됩니다.

① 수량기준 상환: 잔고 수량을 기준으로 상환을 요청하며, 대출 상환금은 대출잔고 1주당 상환단가를 계산하여 상환합니다.

〈예시〉 대출금 5천만원, 주식담보대출 잔고수량 1,000주 보유

▷ 주당 상환단가 = 대출금 ÷ 담보대출 잔고수량 = 5천만원 ÷ 1,000주 = 50,000원

▷ 담보대출 잔고수량 100주 상환 요청

- 상환수량 : 100주

- 상환금 = 주당 상환단가 × 상환수량 = 50,000원 × 100주 = 5백만원

② 금액기준 상환: 특정 금액만큼 현금상환을 원할 경우 상환금을 기준으로 요청하며, 금액기준 상환을 한 경우 주당 상환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대출금 5천만원, 주식담보대출 잔고수량 1,000주 보유

▷ 주당 상환단가 = 대출금 ÷ 담보대출 잔고수량 = 5천만원 ÷ 1,000주 = 50,000원

▷ 대출금 1천만원 상환 요청

- 상환금 : 1천만원

- 상환수량 = 상환금 ÷ 주당상환단가(대출금 ÷ 담보대출잔고수량) = 1천만원 ÷ 50,000원 = 200주

다. 매도상환은 담보증권의 매도로 인하여 결제일에 결제되면서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자동상환시키며 부족 분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수금 발생 시 동결계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연금저축담보대출의 경우 현금상환만 가능하며(매도상환 불가), 입출금연결상품으로 상환원금과 이자를 입금하여 처리합니다.

마.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수도결제일에 자동상환되며, 중도현금상환이 불가합니다.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에 관한 사항

##### ·담보의 징구

- 회사는 대출을 할 때에 대출비율에 따라 담보를 징구합니다.

##### ·담보증권 평가

가. 담보평가 기준가

- ① 상장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 **당일종가** (당일종가의 평가가 불가한 경우 최근일 종가)
- ② 채권/ELS(DLS/ELB/DLB) : 채권평가기관의 평가가격
- ③ 집합투자증권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나. 담보비율 계산

$[(\text{예수금} + \text{원담보평가금}^{\text{①}} + \text{부담보평가금}^{\text{②}} + \text{신용대주담보금} + \text{권리대용금}^{\text{③}}) \div (\text{대출금} + \text{신용융자금} + \text{신용대주평가금})] \times 100(\%)$

- ① 원담보평가금은 신용/대용, 담보대출 담보증권의 평가금
- ② 부담보평가금은 예수금 및 현금잔고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금  
※ 거래소 대용가가 '0'인 종목(관리, 정리매매종목 등)은 부담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은 대용가가 '0' 이더라도 부담보로 평가됨)
- ③ 권리대용금은 담보평가 특례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해서 담보 평가함

무상증자시 신주	기준일 전일부터 상장 전일까지(무상증자 권리주수 × 종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기준일 전일부터 청약종료일까지(유상증자 권리주수 × 종가)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	청약종료일부터 상장전일까지(유상청약 주수 × 종가)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청약종료일(또는 배정일)부터 상장 전일까지(청약 주수 × 종가)
배당락(주식배당에 한함)	배당락 당일부터 상장 전일까지(배당 주수 × 종가)

##### ·추가담보금 자동 징구 및 담보부족 발생

가. 추가담보금 자동 징구

- ① 원담보의 가치가 필요담보금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면 부담보에서 추가로 담보로 설정하게 되며, 추가 담보금의 징구 순서는 현금잔고 → 예수금 순입니다.
- ② 추가담보금의 징구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 계좌(상품)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예수금 또는 보유한 유가증권입니다.
- ③ 추가담보금으로 징구된 예수금 또는 유가증권은 출금, 출고가 제한됩니다.

나. 담보부족 발생

- ①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한 경우 고객이 사전에 정한 유선(불능 시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메일로 추가 담보의 납부를 요구합니다.
- ②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적용비율(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 됩니다.
- ③ 담보평가 및 추가담보제공기간

D일	담보부족 1회 발생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횟수를 증가시킵니다.
D+1일	담보부족 1회 해소	기존 담보부족 1회 계좌가 16시까지 담보부족금액 전액 입금/입고하면 담보부족 횟수를 클리어합니다. 단, 해당일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 시 다시 담보부족횟수 1회로 증가시킵니다. (담보부족 미발생시에는 담보부족횟수 0회)
	담보부족 2회 발생	기존 담보부족 1회 계좌가 담보 미충족시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횟수를 증가시킵니다.
D+2일	임의상환(반대매매)	기존 담보부족 2회 계좌가 담보 미충족시 임의상환(반대매매)합니다.

##### ·담보부족 임의상환(반대매매)

가.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한 경우 추가담보 요구일(D일)로부터 1일 이내 추가납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종요구일 익영업일(D+2일) 오전 동시호가에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임의상환(반대매매)**이 이루어집니다.

나. 추가담보 납부를 통보 받은 후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추가담보금(담보부족 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미충족하여 임의상환(반대매매)하는 경우 임의상환 당일까지의 최종금액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 임의상환 시 전액상환방식(매도정산대금으로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되며, 상품 내 예수금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된 경우에 임의 현금상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임의상환 산정방식 : 담보부족금액 ÷ [(수량산정 기준가격<sup>주1)</sup> × 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거래제비용 감안)

주1) 수량산정 기준가격은 2,3그룹인 경우 전일종가대비 15% 하락가격, 4,5,6그룹인 경우 전일종가대비 30% 하락가격

② 임의상환 처분순서 : 질권일순 → 유통유자 → 자기유자 → 주식담보대출 → 유통대용 → 자기대용 → 펀드담보대출  
→ 채권담보대출 → 종목코드

③ 임의상환 변제순서는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대출금 입니다.

라. 입금/입고, 현금상환 등 거래가 있는 경우 반대매매일 오전 8시 30분까지 반드시 영업점으로 유선 연락하여 반대매매 처리에 관한 업무 (주문취소, 현금상환, 처분순서 변경 등)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만기 미상환 임의상환(반대매매)

가.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 오전 동시호가에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합니다. 임의상환 시 전액상환방식(매도정산대금으로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나. 임의상환 산정방식 : 미상환대출금 ÷ 수량산정 기준가격<sup>주1)</sup>(거래제비용 감안)

주1) 수량산정 기준가격은 2,3그룹인 경우 전일종가대비 15% 하락 가격, 4,5,6그룹인 경우 전일종가대비 30% 하락가격

다. 임의상환 변제순서는 연체이자 → 이자 → 대출금 입니다.

라. 단, 만기일 익영업일 상품 내 예수금이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된 경우에 임의 현금상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입금, 현금상환 등 거래가 있는 경우 반대매매일 오전 8시 30분까지 반드시 영업점으로 유선 연락하여 반대매매 처리에 관한 업무 (주문취소, 현금상환 등)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 부담

가.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대출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9.5%) 이내 로 적용됩니다.

나.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 대출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이자 미납시 연체료 연 9.5%)

②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용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최대 연 9.5%).

다.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일의 D+2일부터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예시] 연체이자 징수

만기일 : 3월 12일, 대출금 10,000,000원(기본금리 연 7.4%, 연체이자율 9.5%)

▷ 3월 13일 상환할 경우 이자

☞  $10,000,000\text{원} \times 7.4\% \times 13\text{일} \div 365\text{일} = 26,356\text{원}$

▷ 3월 14일 상환할 경우 이자

☞  $(10,000,000\text{원} \times 7.4\% \times 13\text{일} \div 365\text{일}) + (10,000,000\text{원} \times 9.5\% \times 1\text{일} \div 365\text{일}) = 28,958\text{원}$

라. 우대금리 적용 시에 연체이자율은 우대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그 밖의 불이익

가. 미상환 용자금/대출금이 있는 경우 출금/고 제한, 신규 매수주문 불가, 만기연장 불가, 대출신청 불가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대출 기간 및 연장사항

### ·대출 기간

대출 구분	대출 기간	만기연장
주식담보대출	180일	조건 충족시 가능
매도담보대출	매도 체결된 종목의 결제일까지	
채권(ELS)담보대출	대출일로부터 1년과 채권(ELS) 만기일 중 짧은 기간	만기연장 불가
수익증권(펀드)담보대출	180일	만기연장 1회 가능

### ·주식담보대출 만기연장

종목그룹	만기연장 조건	만기연장 기간
1그룹, 2그룹, 3그룹	-	180일 (횟수 제한 없음)
4그룹, 5그룹	원담보(질권설정담보) <sup>주1)</sup> 기준 담보비율 170% 이상인 경우 연장 가능	
6그룹	만기연장 불가	

주1) 원담보기준 담보비율  $\geq 170\%$

= (질권수량  $\times$  질권종목 매매기준가<sup>주2)</sup>)  $\div$  해당 질권 대출금  $\times 100(\%) \geq 170\%$

주2) 매매기준가는 전일종가로 산출 (단, 당일종가 수신 이후에는 당일종가로 산출)

### ·만기연장에 관한 사항

가. 만기연장은 고객의 별도 신청(영업점 내점, 유선, 온라인)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나. 주식담보대출 및 수익증권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신청 기간 : 만기일 30일전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신청 가능

- 만기연장시 만기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 ① 만기연장 시점에 당사 대출불가 종목인 경우
- ② 권리락, 투자주의 등 종목 특이사항 발생시 연장 불가
- ③ 미체결 매도주문이 있는 경우 (주문 취소 후 가능)
- ④ 미수/미납 발생계좌, 미상환용자금/대출금 발생 계좌
- ⑤ 체결 기준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 계좌
- ⑥ 사고등록계좌,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 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등록자, 공공기록 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 ⑦ 4,5그룹 종목의 경우 원담보(질권설정담보)기준 담보비율 170% 미만인 경우

---

## 7. 대출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 8. 대출거래의 위험성

- 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 이행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나. 담보대출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회사는 담보대출 상환기일이 경과된 담보대출 거래가 있는 고객은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담보대출 이용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증권담보대출 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권담보대출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해외주식담보대출 상품 개요 및 특성

### 1. 해외주식담보대출

고객의 계좌에 보유한(결제기준) 해외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원화)입니다.

### 2. 대출 약정

가.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출약정은 내점 또는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단,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승인한 고객)을 통해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로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의 고객님들은 대출약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 1) 신용공여 투자자확인서 미징구 고객
- 2)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 515점 이하인 고객
- 3)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 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 4) 외국인
- 5) '개인신용정보' 미동의 고객
- 6) 담보비율미달계좌, 사고등록계좌, 실명미확인계좌, 통폐합계좌, 랩계좌, 증거금면제계좌

다. 해외주식담보대출의 대출약정은 해외증권상품(14)에서 체결이 가능합니다.(해지 시까지 유효) 대출약정 시 인지세법상에 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라. 대출약정 시 본인의 대출최고한도를 정하며, 대출최고한도 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을 징수합니다.

마. 고객은 대출에 대한 한도의 증액 등 중요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변경)하여야 합니다.

바. 대출약정 해지는 신청서에 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해지의사에 대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 해지 시 **인지세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대출 한도

가. 고객별 해외주식담보대출 한도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10억원 입니다.(증권담보용자 한도와 별도)

나. 고객 대출한도가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신규 신용공여 약정 및 신청/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회사 전체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 2) 관리점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 4. 대출가능종목 및 금액

가. 대출가능종목 : 미국/일본 해외주식 중 회사가 대출가능종목으로 분류한 종목

나. 대출가능금액

- 1) 1그룹 종목 :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의 50%의 금액(원화)
- 2) 6그룹 종목 : 대출 불가

※ 대출가능금액 : 기준가격<sup>주1</sup>(전일종가) × 수량 × 50% × 국가별 기준환율<sup>주2</sup>

주1) 기준가격 : 평가금액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은 전일종가 입니다.(단, 기준가격(전일종가)가 없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2) 기준환율 : 당일 서울외국환 중개기준 환율 (당일 중개기준 환율 미수신시 대출불가)

※ 대출 가능한 1그룹 종목 리스트는 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가능/불가종목의 그룹조정은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기(연 2회) 및 수시로 조정되어집니다. 그룹조정이 있을 시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다음의 경우 대출가능종목에서 제외됩니다.

- 매매거래정지종목, 질권설정주식 등 종목 특이사항 발생 종목

### 5. 대출 신청방법

가. 대출은 국내 영업일 9시 ~ 16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해외휴장일 대출 가능, 국내 비영업일 & 해외영업일 대출 불가)

나. 다음의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1) 미상환 용자금/대출금 발생 계좌
- 2)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만 계좌
- 3)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 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 4) 사고계좌, 증거금면제계좌
- 5) 1회 대출신청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 6) 대출신청수량이 이미 질권설정, 선물대용증권지정, 보호예수지정, 매수주문 등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된 경우

## 6. 대출기간 및 연장

가.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90일입니다. (만기일이 국내 비영업일인 경우 국내 기준 영업일로顺延됩니다)

나. 대출 만기연장은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횡수제한 없이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원담보(질권설정담보)기준 담보비율 170%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원담보기준 담보비율  $\geq$  170%**

$$=(\text{질권수량} \times \text{질권종목기준가격}^{\ast 1}) \times \text{기준환율}^{\ast 2} \div \text{해당질권대출금} \times 100(\%) \geq 170\%$$

주1) 기준가격 : 전일종가

주2) 기준환율 : 당일 서울외국환 중개기준 환율(기준환율 미수신시 만기연장 불가)

※ 주가의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환율 변동에 따라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만기연장은 만기일 30일 전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라. 만기연장 시 만기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만기일이 됩니다.(국내 영업일 기준)

마. 단, 다음의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 1) 매매거래 정지종목
- 2) 만기연장 시점에 당사 대출불가종목인 경우
- 3) 권리락 등 종목 특이사항 발생 시 연장 불가
- 4) 미체결 매도주문이 있는 경우(주문 취소 후 가능)
- 5) 미수/미납 발생 계좌, 미상환용자금/대출금 발생 계좌
- 6) 체결기준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 계좌
- 7) 사고등록계좌,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 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 7. 대출 상환방법

가. 대출금의 상환은 전부상환 및 일부상환이 가능하며, 만기일 전에도 상환 가능합니다.

나. 현금상환

1) 현금상환은 국내 영업일 9시 ~ 16시까지 가능하며, 상환과 동시에 담보수량이 질권해지됩니다.

(국내 영업일 기준, 해외휴장일에도 현금상환 가능)

2) 현금상환은 원화기준의 상환만 가능합니다(환전 후 현금상환).

다. 매도상환

1) 매도상환은 담보증권의 매도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2) 매도상환 결제시 외화상환금<sup>주1</sup>을 확보하며, 대출상환 후 남은 금액은 원화예수금으로, 부족금액은 원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1) 외화상환금은 매도상환 결제시 대출상환을 위해 확보해두는 금액으로 대출금 상환업무 전까지 출금, 환전, 주문이 불가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외화상환금} : (\text{주당 상환단가} \times \text{주문수량}) \div (\text{기준환율}^{\ast 2} \times \text{환율변동계수} 95\%)$$

주2) 기준환율 : 최종 서울 외국환 중개기준 환율

① 매도결제는 해외주식 시장 결제시점에, 대출상환은 국내 영업일 기준으로 상환되어 집니다(일본, 미국 9시 30분경).

② 대출 상환시점으로 상환이자가 징수되어 집니다.

③ 상품 내 미수금이 있는 경우 미수금이 먼저 변제처리되어 대출금 상환 후 원화 신규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만기상환(미상환 반대매매)

1)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합니다. 임의상환 시 전액상환방식(매도정산대금으로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2) 임의상환 산정방식 :  $\text{미상환대출금} \div (\text{수량산정기준가격}^{\ast 1} \times \text{기준환율}^{\ast 2} \times \text{환율변동계수} 95\%)$  (거래 제 비용 감산)

주1)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 대비 15% 하락 가격

주2) 기준환율 : 당일 서울외국환 중개기준 환율

3) 임의상환 변제순서는 연체이자 → 이자 → 대출원금입니다.

4) 단, 만기일 익영업일 상품 내 원화예수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 현금상환 처리한 후 임의상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화예수금만 있는 경우 미처리)

5) 임의상환 시의 처분가격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다음과 같이 주문되어 집니다.

-일본주식 : 시장가

-미국주식 : 시장가

6) 입금, 현금상환 등 거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영업점으로 유선 연락하여 반대매매 처리에 관한 업무(주문취소, 현금상환 등)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 미상환용자금/대출금이 있는 경우 출금/고 제한, 신규 매수주문 불가, 만기연장 불가, 대출신청 불가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 8. 대출 이자 및 연체이자

가. 대출이자 적용은 '기본금리 + 기간별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구분	해외주식담보대출
기본금리	연 7.4%
기간별 이자율	~ 180일 : 기본금리 181일 ~ 360일 : 기본금리 + 0.3% 361일 ~ : 기본금리 + 0.6%
연체이자	기본금리 + 3.0% (최대 연 9.5%)

※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전월 CD수익률 평균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체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참고>CD수익률 설명서” 부분 참조)

- 가산금리 :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나. 이자는 체차법(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이자계산은 한편넣기(대출일 불산입) 방식을 적용하며, 보통년은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적용합니다(원미만 절사).

라. 이자는 매월 첫 영업일에 정기이자를 징수하고 상환일(매도상환 시 매도결제시)에 원화로 징수됩니다.

마.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일의 D+2일부터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바.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 별 대출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0%)을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9.5%) 이내로 적용됩니다.

사. 고객의 기여도, 수익 및 자산 등을 감안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우대금리 적용 시에도 기간별 이자율은 가산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에 연체이자율은 우대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9. 담보관리

가. 담보평가 및 담보비율

1) 해외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170%로 종목별 차등 없이 단일비율로 적용됩니다.

2) 담보비율은 해외증권상품(14) 내 대출담보증권 및 원화예수금으로 평가됩니다.

3) 담보평가의 기준가는 당일종가(당일종가 평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종가)입니다.

4) 담보비율 계산 = (원담보평가금 + 부담보평가금) ÷ 대출금 × 100(%)

① 원담보평가금 = 대출담보증권의 평가금(질권수량 × 당일종가) × 기준환율<sup>주1</sup>

주1) 기준환율 : 당일 서울 외국환 중개기준환율

② 부담보평가금은 원화예수금입니다.

5) 담보평가 시 권리대용금, 보유 현금해외주식, 외화예수금은 부담보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나. 담보부족 및 임의상환

1) 담보부족은 담보유지비율을 미달한 경우 발생하며, 해외증권상품(14) 전체의 출금, 출고가 제한됩니다.

2)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한 경우 고객이 사전에 정한 유선(불능 시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메일로 추가 담보의 납부를 요구합니다.

※ 담보평가 및 추가담보제공기간

D일	국내영업일 16시경	담보부족 1회 발생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횟수를 증가시킵니다.
D+1일	국내영업일 16시경	담보부족 1회 해소	기존 담보부족 1회 계좌가 16시까지 담보부족금액 전액 입금하면 담보부족 횟수를 클리어합니다. 단, 해당일 담보평가하여 담보 부족시 다시 담보부족횟수 1회로 증가시킵니다. (담보부족 미발생시에는 담보부족횟수 0회)
	국내영업일 16시경	담보부족 2회 발생	기존 담보부족 1회 계좌가 담보 미충족시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시 담보부족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D+2일	국내영업일 16시경	담보부족 2회 해소	기존 담보부족 2회 계좌가 16시까지 담보부족금액 전액 입금하면 담보부족 횟수를 클리어합니다.
	국내영업일 16시경	담보부족 3회 발생	기존 담보부족 2회 계좌가 담보 미충족시 담보평가하여 담보부족 시 담보부족횟수를 증가시킵니다.
	국내영업일 23시 40분경 (서머타임 22시 40분)	미국주식 반대매매	기존 담보부족 3회 계좌가 담보 미충족시 임의상환(반대매매)합니다.
D+3일	국내영업일 오전 9시경	일본주식 반대매매	기존 담보부족 3회 계좌가 담보 미충족시 임의상환(반대매매)합니다.

3) 담보부족 임의상환(반대매매)

- ①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한 경우 추가담보 요구일(D일)로부터 1일 이내 추가납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종요구일 익영업일(D+3일)에 임의상환(반대매매)이 이루어집니다.
- ② 추가담보 납부를 통보 받은 후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추가담보금(담보부족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미충족하여 임의상환(반대매매)하는 경우 임의상환 당일까지의 최종금액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③ 임의상환 시 전액상환방식(매도정산대금으로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되며, 상품 내 원화예수금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 현금상환 처리한 후 임의상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외화예수금만 있는 경우 미처리).
  - 임의상환 산정방식  
: 담보부족금액 ÷ (수량산정기준가격<sup>주1</sup> × 담보유지비율 170% - 전일종가) × 기준환율<sup>주2</sup> × 환율변동계수 95% (거래제비용 감안)  
주1)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 대비 15% 하락 가격  
주2) 기준환율 : 당일 서울외국환 중개기준 환율
  - 임의상환 처분순서는 미국주식 → 일본주식이며, 대출일 빠른순 → 종목코드빠른순 입니다.
  - 임의상환 변제순서는 연체이자 → 이자 → 대출원금 입니다.
- ④ 임의상환 시의 처분가격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다음과 같이 주문되어집니다.
  - 일본주식 : 시장가
  - 미국주식 : 시장가
- ⑤ 입금, 현금상환 등 거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영업점으로 유선 연락하여 반대매매 처리에 관한 업무 (주문취소, 현금상환 등)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0. 금융소비자의 권리

### · 청약철회권

가.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나.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권 반환에 따른 연체이자율 : 연 12%

### · 위법계약해지권

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위반)

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 자료열람요구권

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나.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다.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1. 민원·상담 유의사항

### ·민원·상담이 빈번한 속지 필요사항

####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당사가 지정한 종목그룹이 6그룹인 경우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지정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며, 투자주의 종목 지정시에는 지정일로부터 5영업일간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담보대출 가능여부는 현재가 화면(화면번호 702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2. 담보대출 후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추가담보를 담보부족 발생(T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시 전일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 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상환기일 미상환시, ii)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 요구에 대한 미납입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 Q4. 담보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기연장은 180일 단위로 가능합니다. 단, 당사 지정 종목그룹에 따라 만기연장 조건이 다르며 조건 미충족시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aishin.com)** 또는 **금융지원센터(☎1588-4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에 민원을 제기(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이용)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접수 → ②민원조사 → ③처리결과 회신 (민원 조사기간 제외 14영업일 내 처리 원칙)

- 당사 민원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12. 기타 유의사항

###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가. 회사는 필요한 경우 **담보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대출비용, 담보유지비용,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증권종합대출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다.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 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 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3. 계약 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 여부 확인

※ 아래 주요 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증권담보대출 미상환시,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금액 미납시 등의 경우 <b>반대매매</b> 가 일어나며, <b>단기간에 주식 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b> 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연체시 <b>연체이자</b> 가 발생되며, <b>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신규·만기연장 불가 등 불이익</b>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증권담보유자 이자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의 내용, 산출 절차 등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셨고 산출업무 중단시 대체금리가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p>⇒ 본인은 주식회사 대신증권과 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증권담보대출의 [ <input type="text" value="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 ]에 대하여 [ <input type="text" value="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p> <p>⇒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 <input type="text" value="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하여 [ <input type="text" value="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p>		

년    월    일    고객명  (인/서명)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참고> CD수익률 설명서

###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 가. CD수익률의 정의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27)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 나.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당사의 증권담보유자 이자율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금리는 전월 CD수익률 평균,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 가.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 나.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 ①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 ②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 가.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 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 ①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 ②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 ③ Level 3 (전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 나.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다.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②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CD수익률 산출과정 오류 등의 처리

가.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 **오류 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② 오류 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오류 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나.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공시한 당일의 17시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가.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적격거래
- ②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 ③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 ④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 ⑤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 ⑥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나.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②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가.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②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가.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 산출업무의 he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나.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다음의 대체금리를 사용하여 증권담보용자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 협회가 공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채권전문평가사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금리로 하며, 3개월 CD 시가평가기준수익률 (AAA등급)의 민평5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평균금리(소수3째자리에서 사사오입)을 적용합니다.

다.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 중단 사실 및 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산정시 사용된 대체금리에 대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 CD수익률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지원센터(☎1588-4488)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